



보도자료

2020. 5. 27.(수) 배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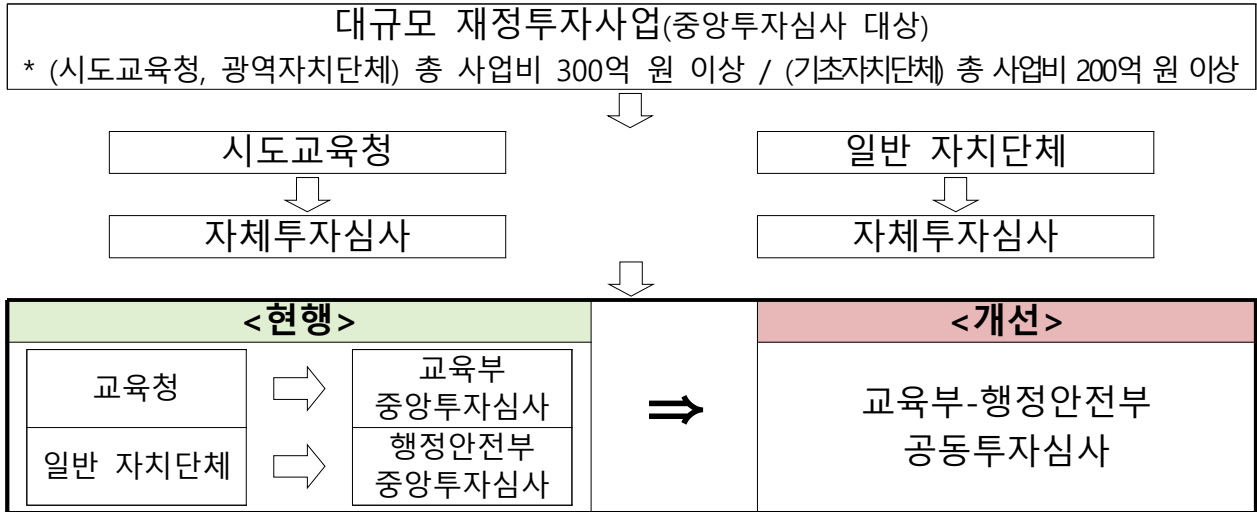


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-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◆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(SOC)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-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시도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-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.
 -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.
-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.

< 시도교육청-일반 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개선사항 >



※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별도 시행하는 '타당성조사'(통상 6개월 이상 소요)도 공동으로 수행하여 심사기간 단축

□ 대표적인 시도교육청-일반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 자본(SOC) 복합화 사업에 따른 '학교복합시설'*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.

* 학교부지 내 체육관·문화시설·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,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

**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(289개) 중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으로 11개 선정

○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·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“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으로,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 라고 밝혔다.

【붙임1】 지방교육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요

【붙임2】 교육부·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간소화 개요



□ **목적**

-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·적정성을 심사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·계획적 배분·운영 달성

□ **근거 법령**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,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

□ **대상 사업**

<자체심사>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

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
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
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
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

<중앙투자심사> 자체심사에서 적정·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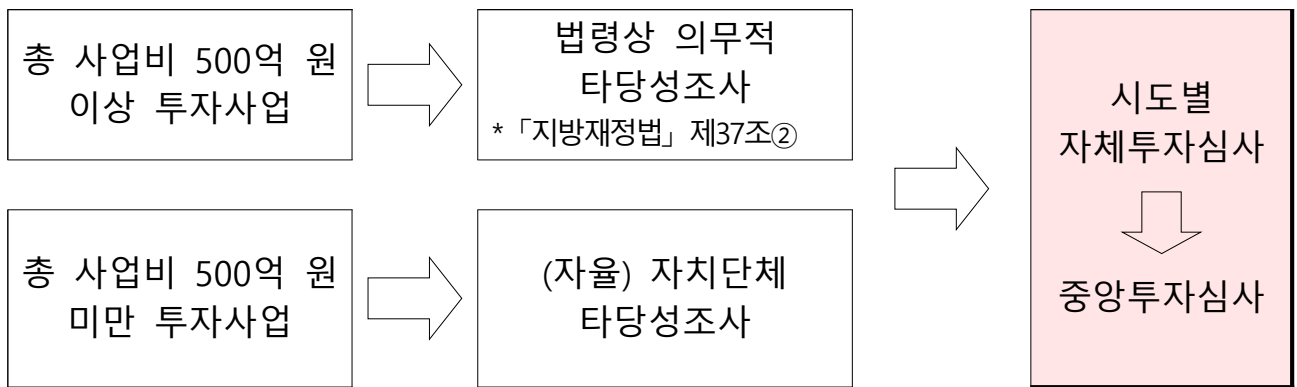
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또는 300억 원 미만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범위	대상
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	①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·이전 사업 ② 청사·연수원 신축·개축 사업
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	①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거나 개별법 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시도교육청 소속(직속)기관 신축·개축 사업 ② 유아교육진흥원·기록관시설 신축·개축 사업

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
 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
 -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
- <타당성 조사>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

□ **심사 시기 및 방법**

- (심사 시기) 매년 3회 정기심사 실시(4, 8, 12월)
- (심사 절차) 시도교육청 자체심사 후 중앙투자심사 시행



- (심사결과) 적정 · 조건부 추진 · 재검토 · 부적정 4단계로 구분
 - 결정된 심사결과는 심사 후 14일 이내에 교육청으로 통보

□ **심사 기준**

- (심사 기준)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위주로 각 시도의 지방 교육재정계획과 교육 수요자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**종합적으로** 심사
 - (학생배치시설) 신규 개발규모, 중장기 학생 수 추이, 인근학교 배치 여력, 학교 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 - (일반사업) 사업추진 타당성, 사업규모, 사업비의 적정성 등 검토

□ 추진배경

- 생활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 확산에 따라 지자체-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*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나,

* 학교부지 내 체육관·문화시설·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,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

- 1개의 사업에 지자체-교육청이 각각 소관부처의 중앙투자심사(기초 200억 원, 광역·교육청 300억 원 이상)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

⇒ 학교복합시설 대상 교육부·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간소화 필요

□ 투자심사 공동 심의

- 교육부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함께 투자심사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*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전체의결로 대신함

* 교육부 교육재정 전문가(5명),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(4명)

⇒ 교육부와 행안부의 투자심사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위원회 신설

□ 타당성조사 공동 수행

-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,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교육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* 수행

* 교육부 전문기관은 학생배치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, 행안부 전문기관은 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, 운영수지 등을 분석,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

⇒ 교육부(지방교육재정)·행안부(지방재정)가 전문기관 교차 지정*

*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'한국교원대학교'를 추가 지정하고,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'지방행정연구원'을 추가 지정

□ 향후 계획

- 교육부·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공동 수행(6월~)